

Legislative & Policy Weekly

# 세종 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71** | 2025.02.03 (2025.01.20~2025.02.0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1.20~2025.02.02)**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 Summary

## 【정부의 주요 정책】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IPO시장(진입)이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공모가와 상장일 이후 주가 흐름에 왜곡이 발생하고, 완화적인 상장 폐지(퇴출) 요건과 절차로 인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대 생명공학(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생명과학 미래유망 기술은 향후 5~10년 이내에 기술적 또는 산업적 실현이 가능하며, 첨단생명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기술·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입니다.

##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일괄입찰 유찰 이후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이전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물가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제선과 전파법 개정 및 타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준비를 위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가 삭제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등에 대해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심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자회사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두어 상품특화 보험회사 등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미비점이 나타나는 제재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 운용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미래보다 현재의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규정하고,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에 포함하며,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주식취득 비율 제한의 예외로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

사업자가 위치정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 침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4인)**」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의원 등 12인)**」 ,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건태의원 등 11인)**」 ,

건강한 상태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까지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기 위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2.3(월) 14:00 **2월 임시국회 개최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교육위>, <복지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목 차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8
- 「2025년 10대 생명공학(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
- 「생성형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 ..... 10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12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 1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 1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소벤처기업부) ..... 13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국토교통부) .....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 15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15

###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 16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6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7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1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8

###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 19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 1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 1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 20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5인) ..... 21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 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 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 24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의원 등 12인) ..... 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 25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4인) ..... 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 26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7인) ..... 26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 27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의원 등 12인) ..... 27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 2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28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2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 2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 2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3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30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 ..... 3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 ..... 31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건태의원 등 11인) ..... 32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7인) ..... 32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7인) ..... 33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엄태영의원 등 10인) ..... 3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 34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 35

###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중국] 2025년! 중국에 대한 新전략의 원년으로
- [조세]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법인과세 분야)
- [조세]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국제조세 분야)
- [조세]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자산과세 분야)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0 (2025년 1월 4째주)
- [바이오/헬스케어]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시행과 그 시사점
- [바이오/헬스케어] 2025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p>	<p><b>「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O 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 →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li> <li>-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li> </ul>	<p>2025-01-21</p>
------------------------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주식시장의 진입과 퇴출 측면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IPO시장(진입)이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공모가와 상장일 이후 주가흐름에 왜곡이 발생하고, 완화적인 상장폐지(퇴출) 요건과 절차로 인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임.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힘

### <IPO 제도개선 방안>

근본적으로 IPO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 →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음

#### 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 기관투자자 배정수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배정
-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상한금액 30억원)하여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도 3개월 → 6개월로 확대
-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
- 의무보유 확약 위반,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한 협회 차원의 제재 강화

#### ②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참여자격을 강화
- 고유재산 참여시에만 존재하던 등록기간 및 총위탁재산 규모 관련 자격요건을 운용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3개월 이상 의무보유 확약시 강화된 요건 적용을 면제하고 기존에 조성된 펀드·일임계약의 경우 '25년말까지 적용을 유예



-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 제한
- 수요예측 초일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초일 가점제도 개편

### ③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 지속 추진
-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기준 구체화
-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

###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통해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음. 이와 함께 퇴출 확대에 의한 투자자보호 이슈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 및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도 포함시켰음

#### ①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의 기준을 상향조정
-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
- 기존 코스닥에만 도입되어 있던 분할재상장(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코스피에도 도입

#### ②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절반 수준까지 축소하고,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함과 동시에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
- 개선기간 추가부여 성격의 속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
-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

#### ③ 투자자보호 보완

-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 지원
- 상장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년 10대 생명공학(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

- 인간 면역체,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 생명과학 파운데이션 모형(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등 선정

2025-0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은 생명과학(바이오) 분야의 미래 이상을 제시할 「2025년 10대 생명과학(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하였음

생명과학(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은 향후 5~10년 이내에 기술적 또는 산업적 실현이 가능하며, 첨단생명과학(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기술·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임. 올해 선정된 10대 기술에는 ▲인간 면역체,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 ▲생명과학(바이오) 파운데이션 모형 등이 포함되었음

2025년 생명과학(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 결과에 따르면, 향후 생명과학 연구 체계는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하여 반복적인 실험과 관찰 중심의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추론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됨. 생명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를 넘어 ‘편집·리프로그래밍(Edit)’ 하고, 유용한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며, 가상 공간에서 생명현상을 ‘예측·모의실험(시뮬레이션)(Imagine)’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견과 개발의 주기를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가속화할 전망이다

<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

분야	기술명
관찰/분석 (Read)	▶인간 면역체(Human immunome)
	▶다중암 조기진단(Multi-cancer early detection)
	▶리보핵산(RNA) 구조체(RNA structure)
편집/리프로그래밍 (Edit)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AI-designed gene editors)
	▶항노화 항체치료제(Anti-aging antibodies)
	▶분자 접착기술(Molecular glue)
모사/합성 (Write)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Motile living biobots)
	▶디지털 인공장기(Digital artificial organs)
예측/모의실험(시뮬레이션) (Imagine)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형(Bio foundation model)
	▶건강돌봄(헬스케어) 디지털 복제(디지털 트윈)(Healthcare digital twin)

이번 2025년 생명과학 미래유망기술 발표는 국민들에게 생명과학 분야 미래상을 보다 쉽게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최신 연구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여 연구개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정부는 최근의 생명과학 연구개발사업 분석을 통해 미래유망기술 관련 공백 분야를 발굴하고 새로운 국가사업으로 이를 육성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b>식품의약품안전처</b>	<p><b>「생성형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선도적 글로벌 기준 마련</li> <li>-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발간</li> </ul>	<b>2025-01-24</b>
-----------------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도움을 주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한다고 밝혔. 이번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에 대해 안내하였음

의료영상 판독, 진단 보조, 치료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데이터 편향, 정확성 부족, 윤리적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경우 이를 고려해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조사하고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후 관리까지 전(全)주기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였음

참고로 식약처는 2017년부터 안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신속히 국민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와 임상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10종)을 개발·발간해 왔음.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싱가포르 공동으로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지도 지침’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국제적으로 규제 전문성을 입증하였음.

또한, 식약처는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적합성 자료’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정·발간하였음.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허가(인증)신청서 및 사용적합성 요약서에 대한 작성 기준·요령을 상세한 예시를 활용해 설명하고, 변경허가(인증)대상과 사용적합성 관련 위해정보 수집 방법 등도 안내하였음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25-04-22 시행 예정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 시험·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제조업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위사업법」을 준수한 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민간 우주발사체 분야에 활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2025-07-22 시행 예정
-----------	------------------------------	------------------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 법에서 남길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2-07 시행 예정
---------	----------------------	------------------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96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자원안보 진단·평가 및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의 방법과 절차 등 자원안보위기의 대비를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고, 핵심자원을 비축해야 하는 공급기관 및 비축대상 핵심자원 등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등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긴급대응조치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7-22 시행 예정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7-22 시행 예정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의 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승인이나 신고 없이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을 억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시키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7-22 시행 예정

종전에는 수탁·위탁거래 시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와 이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수탁·위탁기업 양측에 모두 부과하였으나, 위탁기업의 거부로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탁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앞으로는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와 이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위탁기업에 한정하여 부과**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수탁기업이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철도를 지하화하는 철도지하화사업과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7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의 범위와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특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의 범위 (제2조)

-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의 범위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철도용지인 부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시설인 철도의 부지 중 철도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부지로 정함

②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제3조)

-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폭넓게 정함으로써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유연한 철도부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③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

-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중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수익, 토지이용계획 및 이와 관련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존 철도의 기능 유지 방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④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의 범위 (제10조)

- 시·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은 같은 영에서 정한 최대한도의 100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⑤ 철도지하화사업 완료 전 출자받은 철도부지의 처분 (제12조)

-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자는 철도지하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된 철도부지를 철도지하화사업 완료 전에 처분할 필요가 있고, 해당 부지를 처분하더라도 자금 조달 및 철도 기능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지하화사업 완료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출자받은 철도부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⑥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제13조 및 제14조)

- 사업시행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도록 하고, 채권의 발행 총액·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방법 및 절차를 정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1-21 시행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령**

2025-01-24 시행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규제지원센터 및 인증업무 등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법률 제20139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공표 방법 등을 정하고,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정하며, 디지털의료제품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규제지원센터 및 인증업무 등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1.20. ~2025.03.04.

일괄입찰 유찰 이후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이전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물가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현실화 (안 제27조제2항)

-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tel:044-215-5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1.22. ~2025.03.04.
-----------	----------------	-----------------------------

위성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성통신 단말기에 적합한 무선국종을 신설하고 개설효과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제형별 합리화 계획(기재부, '22.6월)에 따라 경미한 적합성평가 위반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전파법이 개정('24.10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이동형지구국 신설)** 이동체(선박·항공 등)에서 광대역 통신을 지원하는 단말기의 무선국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동형지구국(3종\*) 정의 신설  
\* 육상이동형지구국, 해상이동형지구국, 항공이동형지구국
- **(허가의제 도입)** 사업자가 대표로 허가받으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단말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 ② 전파법 개정, 타 법령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시행령 정비

- **(적합성평가 위반 제재 합리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시행령 정비)**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및 舊 부동산공시법(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법 및 부동산공시법으로 분리됨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044-202-4924, 팩스: 044-202-6043\)](tel:044-202-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5.01.21.  
~2025.03.0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82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마련 (안 제8조의2 제5항 제10항)
- ② 규제샌드박스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 규정 (안 제40조 및 제42조의4)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산업제도과](mailto:science@kita.go.kr) (전화: 044-202-6144, 팩스: 044-202-6033)

##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5.01.24.  
~2025.03.25.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가 삭제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인체 등 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으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 규정 (안 제3조 및 별표 1)
- ②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유해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추가 (안 제7조)
- ③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반영 (안 제11조, 제20조의2, 제27조 및 제31조)
- ④ 법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신설 및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개정에 따라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추가 (안 제16조)
- ⑤ 법 제45조(자료의 보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개정 (안 제30조)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와 무관하게 용도 분류, 등록의 형태,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등의 공개 근거 마련

#### ⑥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규정 개정 (안 제31조)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권한·업무를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일원화

※ 문의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전화: 044-201-6784, 팩스: 044-201-6786\)](tel:044-201-6784)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1.24.  
~2025.03.05.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제20450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등에 대해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의 세부규정 신설 (안 제14조의14, 별표 5의10, 별지 제57호의5서식 신설)
- ② 기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의 규정 정리 (안 별표 8)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전화: 044-201-7388, 팩스: 044-201-7394\)](tel:044-201-7388)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1.23.  
~2025.03.06.

건설공사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업자 제도의 선정 기준과 유효기간을 정비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도 게시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사업자 선정 및 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화: 044-201-4592, 팩스: 044-201-5553\)](tel:044-201-4592)



###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2025-01-21 발의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에게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결합심사는 법률적 검토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분야의 시장 분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심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미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시 주식·자산의 인수가액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심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12항 신설)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025-01-22 발의

현재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이외 이종(異種)의 업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의 경우에만 교차모집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분리·특화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 다양한 제재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회사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두어 상품특화 보험회사 등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미비점이 나타나는 제재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2025-01-31 발의

최근 알리·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국내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하고자 함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규정과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지를 두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현실성이 없으며,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 요건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안 제3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4항)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025-01-31 발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학습데이터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방식의 변화, 사회적 요구 등을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확보, 범죄예방 등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시급한 분야 등에서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처리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요인 평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의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등 엄격한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12 및 제28조의13)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2025-01-20 발의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경제·민생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공급망 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는 등 관련 제도 미비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 운용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 규정을 도입함 (안 제45조의2 신설)
- ②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 (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 ③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기간을 5년으로 하되, 공급망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법률 제19828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부칙 제2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5인)

2025-01-22 발의

현행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일반 상시근로자 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 특히, 수익성 악화와 긴축 경영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신규 채용이 줄고 있으며, 중견기업 역시 실적 악화와 수요 감소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어려운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8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2025-01-22 발의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해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그간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최대 3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2025-01-22 발의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공제 방식 한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세액공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초기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이월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실질적인 혜택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미국의 IRA법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세계 경쟁력 측면에서도 뒤쳐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미래보다 현재의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2025-01-23 발의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세액공제조항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자원개발의 범위가 광물 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의 핵심요소인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리튬, 흑연 등의 경우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이지만 특정국가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위기에 취약한 상황임. 리튬, 흑연 등과 같은 필수광물의 경우에는 정제련 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정 국가에서 수출 통제 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를 맞아 이차전지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함

이에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망 확보를 돕고자 함 (안 제104조의15)

#### 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025-01-23 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상생협력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기금 출연을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상생협력기금 조성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중소기업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제8조의3)

#### 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2025-01-23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으로 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8)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2025-01-23 발의

최근 들어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회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게이트 재단 등 글로벌 우수 공익법인이 이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2021년 기준 국내 사회적금융 규모는 6,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비영리 민간기금 용자는 2% 정도에 불과하여 활성화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공익목적 투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고, 동 투자의 가능 여부도 주무관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임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규정하고,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에 포함하며,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주식취득 비율 제한의 예외로 두어 국내 공익목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8 조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2025-01-23 발의

우리나라 국토 면적 중 수도권 면적은 약 1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7%(23년 기준)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각한 수준임. 반면, 지방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위기를 방치할 경우 국민 삶의 질,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국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업들의 지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요청한 바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경기 활성화와 지방거점 장수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8 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의원 등 12인)

2025-01-24 발의

현행법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제정됨.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조항과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의 유출 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2025-01-31 발의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 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지역은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있음. 첨단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 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며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기한이 올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됨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상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4인)

2025-01-22 발의

최근 기술 발전과 ICT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위치정보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사업자의 지위를 구분하여 차등 규제하는 등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의 위치정보 산업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위치정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소규모 사업자도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적·산업적 환경 변화로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크지 않게 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여 사업자가 위치정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 침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권리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025-01-24 발의

최근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알고리즘 기반 정보추천서비스(이하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라 함)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여론에 편향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는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이용자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등 민주적 공론장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임

이에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선택 절차 등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 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7인)

2025-01-21 발의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동시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또한 영농형태양광은 농촌 공동체 내에서 영농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도하에 추진됨으로써 농업인 소득 향상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됨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영농태양광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채로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형태양광의 안정적 보급·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 및 지원근거를 담은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형태양광의 체계적인 보급 지원체계를 갖추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2025-01-20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가 있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2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의원 등 12인)

2025-01-22 발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로서 시장 수요와 부가가치가 높아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은 높은 제조 기술 수준과 설비투자 비용으로 인하여 위탁개발생산 방식을 활용한 제품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추세임

이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2025-01-22 발의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신·변종 감염병의 지속적인 등장과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따른 새로운 보건 의료 수요 급증 등 변화하는 보건 의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을 예방·진단 및 치료하고 건강 증진에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분야에 특화된 복합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도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지정·육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을 우선 허용하고, 허가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복합단지에서의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2025-01-21 발의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구인자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행위 또한 채용의 공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채용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3)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2025-01-21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채용과정에서의 신체적 조건, 가족정보 등의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 본인의 성별·연령·용모·키·체중·임신여부·병력(病歷)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학력·출신학교·종교·혼인여부·재산 등의 사회적 조건,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가족 정보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1항)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2025-01-22 발의

사업주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이에 국세청의 소득자료의 연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있는 「전자정부법」에도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소득자료를 신고받지 않고 국세청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

따라서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소득세법」 상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10)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2025-01-23 발의

현행법은 하수급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이 도급계약서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발주하는 도급계약에 대하여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44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01-23 발의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 절차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제26조제4항), 개별법에 별도의 추천 절차가 규정된 준정부기관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운영법 해당 조항은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던 규정을 단순히 별도 항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함

이에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3항)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01-23 발의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의무의 수범자를 사용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음. ‘셀프 조사’의 경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가 오히려 피해노동자에게 또다른 괴롭힘으로 작용할 소지가 큼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도 내부 지침을 통해 사용자에게 의한 괴롭힘 사건은 근로감독관도 병행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가해자인 사용자의 ‘셀프 조사’ 의무가 존속한다는 점, 사용자의 조사결과가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와 상이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률상 직접적 조사의무자인 사용자의 조사결과를 배척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셀프 조사’ 의무를 제거하며,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괴롭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직장을 만들려는 것임

#### 환경노동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

2025-01-24 발의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사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최근 일부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무공해차 사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환경부는 민원센터 운영, 충전시설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 신설 등)

####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

2025-01-31 발의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을 정기·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그간 통상임금의 산정은 법원의 판례에 의해,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고정성이라는 기준이 추가되어 이루어져 왔음. 이로 인해, 명칭을 불문하고 재직이나 근무기간 등 요건을 갖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왔음.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통상임금의 기본적 성격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노동현장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음

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정기, 고정, 일률이라는 기존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하여 고정성을 제외하기로 한 바, 변경된 법리를 법률에 반영하고 향후 노동현장에서 통상임금 산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금번 판례대로 정기, 일률적인 임금의 경우 부가되는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건태의원 등 11인)**

2025-01-20 발의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원도심의 쇠퇴와 광역적인 정비의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작년 4월 선도지구 선정에서 국토부는 사업 대상을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으로 한정하여 1기 신도시 살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후 도시 개발을 기대하던 원도심은 오히려 국토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함

이에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원도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7인)**

2025-01-20 발의

현행법은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하자를 점검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두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와 입주예정자에게 제출·통보하도록 하는 등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들이 하자점검 전문가를 대동하여 면밀한 하자점검을 하려고 해도 시공사가 사전점검 방문인을 제한하여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의 외부인 출입문제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사전방문 기간을 2일 이상으로만 규정함에 따라 시공사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사전방문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문제가 있으며, 최근 개정되어 시행예정인 시행규칙에서는 사전방문기간을 연기할 때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사용검사권자가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현황을 파악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등 사전방문 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가의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방문기간을 2일 이상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와 입주예정자에게 제출 및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방문기간을 연기할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연기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연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7인)

2025-01-21 발의

현행법은 사전방문 실시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인 공동주택을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이전에도 설치·운영되어 주요 공정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30세대 이상부터 30세대 이상까지 다양한데,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품질점검단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검사권자는 제출받은 품질점검단 점검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조치결과, 품질점검단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예정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품질점검단 점검결과를 공개 요구를 통한 소극적인 방식으로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조치결과 등의 자료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입주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이전에도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한편, 품질점검단 점검결과를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3제1항·제2항·제5항 및 제8항)

국토교통위원회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2025-01-22 발의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20.3%, 2060년에는 43.9%로 10명 중 4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 하지만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2021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은 양로시설 195개, 노인공동생활가정 107개, 노인복지주택 36개로 전체 고령인구 850만 명의 0.1%에도 못 미치고 있고,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또한 노인복지주택의 대부분은 유료 실버타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가의 관리비로 인해 고령자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지 선택의 폭 또한 제한적임.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반면에 은퇴자의 노후에 대한 대책은 마땅히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고, 나이가 들어도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여유롭고 편안한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이에 건강한 상태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까지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2025-01-22 발의

이 법 제60조에 따르면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나 기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주택공급이 대부분 선분양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는 견본 주택을 보고 건축 완료 전에 주택 구매를 위한 의사결정을 먼저 내려야 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완공된 주택이 견본주택과는 다른 마감재나 품질로 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가 주택공급자와 법적 분쟁을 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4조제5항에는 사업주체가 허가권자(기초지자체)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자료는 사용검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폐기될 것이나, 위와 같은 법적분쟁은 그 이후에도 일어날 소지가 상당하므로 이런 경우 해당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주택공급자는 견본주택에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이 전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촬영을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법적 분쟁 발생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법에 근거하여 자료를 보유하는 기간을 대폭 늘려,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하고자 함 (안 제54조제5항 및 제8항)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수요의 증가, 국내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한 저가항공사의 신규 노선 취항 등으로 인해 항공업계의 변화가 크고, 이로 인해 항공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불만사항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령은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과 피해내용 및 피해구제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교통이용자에게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국토교통부가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등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개별 항공사 등으로 직접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사항의 전체 사항과 구제현황을 알기엔 제약이 많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들이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소비자에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사의 서비스 증진 노력을 독려하고자 함

한편, 최근 일부 항공사가 교통약자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분명하게 고지하지 않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에 소홀했으며, 휠체어 리프트와 같은 이동의 필수적인 장비들을 갖추지 않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사의 서비스 결함에 대한 정보를 정작 교통약자들이 찾기는 어려운게 현실임

이에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교통약자가 항공기 이용 시 서비스 및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포함시켜**, 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교통약자 서비스 다양화를 독려하고자 함 (**안 제61조제6항,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

###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2/3(월) 14:00	- 개회식

####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교육위	법안소위	2/6(목) 10:00	- 법안 심사
복지위	법안1소위	2/3(월) 본회의 산회 직후	- 법안 심사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2/3(월) 07:30	한중 주요 현안 대외정책 세미나	이병진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2/4(화) 14:00	(2025년 국회에 바란다)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전용기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2/4(화) 14:30	[트럼프 2기 출범 K방산 이슈 세미나 ①] 국내외 함정 사업 발전적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유용원·서일준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2/6(목) 14:00	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	맹성규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2/6(목) 14:00	[2025 디지털 정책포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최형두·정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2/6(목) 14:00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건전한 디지털 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	강준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2/3(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호(2025-2호) 발간	국회도서관	
	2/3(월)	「Data+」 통권 제1호(2025-1호) 발간		
	2/5(수)	「금주의 서평」 제714호(2025-5호) 발간		
	2/4(화)	「NABO Focus」 제88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22(수)	「금주의 서평」 제713호(2025-4호)	국회도서관	
	1/23(목)	「팩트북」 제115호		
	1/24(금)	「NABO 경제동향」 2025년 1월호	국회예산정책처	
	1/24(금)	「이슈와 논점」 제2320호 트럼프 신행정부 외교안보 분야 인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1.20.~2025.02.02.)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21(화)	중국	<b>2025년! 중국에 대한 新전략의 원년으로</b>
1/23(목)	조세	<b>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법인과세 분야)</b>
1/23(목)	조세	<b>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국제조세 분야)</b>
1/23(목)	조세	<b>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자산과세 분야)</b>
1/24(금)	금융	<b>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0 (2025년 1월 4째주)</b>
1/24(금)	바이오/헬스케어	<b>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시행과 그 시사점</b>
1/24(금)	바이오/헬스케어	<b>2025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b>

##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